



# 문화체육관광부



수신 종교단체 대표  
(경유)

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

1. 관련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2.4.1.)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**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한 점진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**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### <주요 조치 사항>

구분	내용(변경사항)
운영시간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현행) 23시 운영시간 → (변경) <u>24시 운영시간 제한</u></li> <li>◦ 대상시설(13종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유흥시설 등 ▲ 식당카페 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목욕장업 ▲ 실내체육시설</li> <li>▲ 학원(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) ▲ 영화관공연장 ▲ 카지노(내국인) ▲ 오락실</li> <li>▲ 멀티방 ▲ PC방 ▲ 파티룸 ▲ 마사지업소안마소(의료법 등에 의해 개설된 안마시술소, 안마원 제외)</li> </ul> </li> <li>※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시각 <u>23시→24시로 연장하며, 종료시각도 익일 01시→02시로 연장</u></li> </ul>
사적모임 제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(현행) 9인 이상 금지 → (변경) 11인 이상 금지</li> </ul>

※ 종교시설 관련 방역수칙 이전과 변동없음

3. 위의 변경사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을 전파·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이용자 수칙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특히, 지역 내 유행이 지속되어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지방자치단체에서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등 방역강화 조치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아 래 -

가. 적용기간: 2022.4.4.(월) 0시 ~ 2022.4.17.(일) 24시

나. 적용지역: 전국 17개 시·도\*

\* 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

세종특별자치시,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다. 경과규정

-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2925(2022.3.18.)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**2022.4.4.(월) 05시까지 유효**
- ② 2022.4.4.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**2022.4.18.(월) 05시까지 적용**

- 붙임 1. 전국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  
2.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.  
3.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.  
4.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(공문) 1부. 끝.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

주무관 김해강 행정사무관 대결 2022. 4. 4.  
차혜란

협조자

시행 종무1담당관-1129 (2022. 4. 4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층 / <http://mcst.go.kr>

전화번호 044-203-2328 팩스번호 044-203-3462 / [mostovoi10@korea.kr](mailto:mostovoi10@korea.kr) / 대국민 공개

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